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10. 12.(금) 10:02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 (1인)

---

##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2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삼석 위원님께서는 공무상 외부 회의참석으로 불참하셨습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5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5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55-467)

###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한 이유는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관련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20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사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서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단말기에서 1588 등과 같은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서비스를 하면서 3분당 39원의 요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이 3분보다 짧으므로 유선전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던 카드 가맹점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2012년 10월에 전용 대표번호 1639국번을 부여하고 저렴한 요금제 전당 24원 요금제를 적용한 ‘결제호처리서비스’, 이하 1639서비스라고 한다, 요금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도입 후 5년이 지났으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전혀 없다는 언론보도 및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인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대표번호 서비스 관련 주요경과 및 관련 보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과로는 2018년 3월 14일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통지를 하였고, 3월 26일부터 5월 30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16일간 시정조치(안)에 대해 피심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 및 기간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사업자 17개사 등 23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으로는 카드결제호서비스가 도입된 2012년 10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5년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통신사는 주케이티 등 6개사입니다. 이 6개사의 벤(VAN)사업자와 관련된 전체매출액은 172억원이며, 계약하고 있는 벤(VAN)사업자는 14개사 그리고 대표번호와 관련된 회선은 121,000여개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벤(VAN)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주 등 14개사입니다. 관련매출액은 전체매출액 중에서 유선 전화 카드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액은 전체 14개사를 합쳐서 70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조사대상 23개 사업자 중 3개사는 벤(VAN)사의 대리점으로 파악되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업무를 위탁한 벤 사업자와 병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심인 이용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대표번호 서비스 이용(가입) 절차입니다. 유선통신사는 벤 사업자에게 대표번호서비스를 위한 통신회선을 판매하면서 ‘대표번호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벤 사업자와 계약한 가맹점이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한 조회 시 발생하는 통화료는 유선통신사가 청구하며, 가맹점을 관리하는 대가로 유선통신사가 벤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벤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벤 사업자는 카드결제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판매하면서 유선통신사와 상호 협의없이 대표 번호서비스 관련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카드결제용 단말기’에 카드결제호 처리 시 통화 연결 순위를 설정하여 가맹점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17,687개의 위탁 대리점을 통해서 184만 여개의 카드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계약서는 ‘가맹점 가입신청서’, ‘신용카드단말기 이용계약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번호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별 계약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서비스 이용(가입) 현황을 볼 때 피심인①에서 ⑥까지 유선통신사 6개사와 피심인⑦에서 ⑯까지 벤 사업자 14개사는 217개 회선의 대표번호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년 10월 카드결제서비스 식별번호 1639국번을 부여받고 ‘1639요금제’를 도입한 이후에 벤 사업자를 포함하여 누구와도 ‘1639서비스’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입니다. 피심인①에서 ⑥ 유선통신사 6개사는 피심인⑦에서 ⑯ 등 14개 벤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약정을 주로 1년에서 3년 사이로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117회선의 이용 계약을 연장하면서, 신규 출시되어 이용 가능한 요금제인 ‘1639서비스’ 이용요금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종전 약정에 따라 더 비싼 요금제로 이용 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신규로 가입한 100회선의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가지 요금제 중에서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요금 3분당 39원 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1639서비스’ 이용요금 건당 24원 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심인⑦에서 ②까지 적시된 벤 사업자 14개사는 대리점과 위탁 계약 시 또는 피심인의 위탁 대리점과 184만 여개 카드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선전화 기본요금 이외에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통신요금 3분당 39원이 발생한다는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벤 사업자는 카드 가맹점과 임의의 가입 신청서 등을 통해 유선전화 부가서비스 형태인 대표번호 이용요금 안내 없이 단말기 요금이나 카드 결제 관리수수료 등의 사항만을 안내하고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 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용요금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피심인①에서⑥ 유선통신사는 벤 사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10월 이후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 더 저렴한 1639요금제가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있고, 피심인⑦에서 ② 벤 사업자는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선전화서비스의 기본요금 외에 대표전화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 3분당 39원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 내지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협행 사업법 제50조제1항 제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제출 의견 및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통신사는 6개사가 공동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유선통신사는 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대표번호서비스 수익을 상호 배분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있는 일반 이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부가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서 제외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고, 벤 사업자도 단말기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 이를 위한 대표번호서비스를 유선통신사로부터 일괄하여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중요사항에 대한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 유선통신사는 '1639서비스' 요금제는 당시 정부의 보도자료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며, 벤 사업자는 '1639서비스' 이용 시 대표번호서비스에 상당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선통신사 입장에서는 고지하여도 벤 사업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벤 사업자는 '1639서비스'에 대해서 유선통신사업가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제출하였고, 이용자인 벤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표번호서비스 요금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전환비용이 들더라도 신규요금제를 선택해서 더 많은 가맹점을 유치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1639서비스' 이용요금은 계약 전환이나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유선통신사는 2018년 3월에 올해 저희가 조사를 개시하고 나서 모든 카드결제 요금을 기준 39원에서 24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하고 5월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벤 사업자에는 13개사가 개별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은 첨부에 다 붙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유선통신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검토 결과, '카드결제 단말기'는 단말기에 설정된 대표번호 회선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기계로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 단말기에 통화 연결 순위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벤 사업자는 업무제휴 협약 등을 통해 유선통신사의 위탁

(대리) 관계에 있으므로 고지 의무는 유선통신사에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 결과 밴 사업자와 유선통신사 간 '업무제휴 협약서 등'에 의한 계약은 통상적인 서비스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밴 사업자가 모집한 가맹점 정보를 유선통신사가 관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위탁에 따른 대리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에 대한 요금고지 의무는 카드결제에 따른 대표번호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유선통신사에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 결과 유선통신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과금 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이용자를 직접 모집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표번호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을 고지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피심인 유선통신사 6개사와 밴 사업자 14개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그래서 유선통신사는 중앙일간지 및 자사 홈페이지, 그다음에 밴 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입니다. 카드결제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시 가입 신청서 등의 서류 보관 및 교류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한 것과 통신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실제 이용자에게 통신 이용 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은 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조회 결과, 이견이 없다고 회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보고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징금 부과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보다 저렴한 '1639요금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도입 취지를 왜곡하거나, 관행적으로 유선통화서비스의 기본요금 외에 별도 통신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가맹점 이용자의 통신비용 절감 이익을 해손한 사실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대표번호서비스 매출액 중 유선통화 카드결제와 관련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출액 평균으로 했을 때 유선통신사가 222억, 밴 사업자가 97억입니다. 총 320억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기간이 길고, 서비스 이용자인 가맹점의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의 2%를 부과기준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적 가중·감경은 가중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모든 피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은 가중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최종 과징금은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모두 거친 금액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적용하여 피심인에 대해서 각 80만원에서부터 6,010만원까지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업자별 최종 과징금 부과(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피심인 ⑩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최소 과징금 부과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과징금 금액은 없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안)를 작성되는 대로 통보

하고, 내년 연초에 시정조치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실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12년도에 더싼 요금제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5, 6년간 그것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업무소관은 어디까지 입니까? 몰랐던 데 대해 소관업무를 구분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대표번호에 대해서 번호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해 약관을 처리하는 것은 과기정통부 소관업무입니다. 옛날 구(舊) 방통위이고, 지금 현재로는 과기정통부입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에 유선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결제호처리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1639국번을 부여한 것은 당시 과기정통부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을 뒤늦게 5, 6년간 모르고 있다가 늦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가 나가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알게 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의 경우에는 싼 요금제가 나왔는데 알렸으면 당연히 그 요금제로 가입하려고 했겠지요. 우리가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하게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를 들어 보면 유선통신사와 밴 사업자 간 서로 고지할 책임이 상대편에 있다고 서로 떠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분이 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금제에 관한 사항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요금이 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밴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요금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고지해서 더 가맹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싼 요금제가 도입된 취지를 널리 알리고 관리했어야 하는 부분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맹점에 피해가 있었고, 또 5, 6년간 이것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중에 또 국감을 통해 알려지게 되어서 전부 다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책임소재에 대한 경증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처에서 판단한 것이 충분히 피침인들 의견을 들어본 것이지요?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서로 책임을 떠미는 형국인데 판단을 나름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 까지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옥 부위원장

- 지금 사무처의 판단 근거를 보면 유선전화와 밴 사업자 모두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그런데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고지하지 않은 대상이라든지 어떤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에 대한 위반이 같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 ○ 허 옥 부위원장

- 책임소재의 경중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유선사업자나 밴 사업자 모두 가맹점에 대해 일정하게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9원 요금과 24원 요금의 편차가 15원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금액이 쌓여서 결국은 밴 사업자와 유선사업자들에게는 엄청 난 이익이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한 피해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2년 구(舊) 방통위가 카드결제서비스 요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결국 정책효과가 시장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음을 언론과 국회 지적을 통해 인지하게 된, 우리로 보면 자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문제가 지적된 후에 우리 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유선통신사와 밴 사업자는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발적인 요금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저희가 작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억원 정도 인하되는 것으로 봅니다. 언론에서는 140억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 허 옥 부위원장

- 언론보도 주장으로는 약 140억원이고, 실제로 계산했을 때는 65억원 정도….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 ○ 허 옥 부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올 초까지 이용자 요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해서 영세상공인 지원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뒤 유선통신사와 밴 사업자들 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해 온 것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엄격한 행정처분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2013년 사후규제 전담조직으로 재편되면서 2012년에 서비스 시행 당시의 정책 판단에 대한 효과분석을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저도 전반적인 사항과 사무처의 판단에 따라 의결주문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경우 가맹점에 비해 당연히 통신사와 밴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가장 말단 이용자들의 편의를 당연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 사업자의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는 밴 사업자와 가맹점과 직접 관계를 맺는 밴 사업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신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실무의견 낸 대로 저도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이용자 이익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이것을 다루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에 대한 중간점검을 해야 합니다. 중간점검을 했더라면 사전에 이용자들의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방통위 인력이 그만한 수준은 못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에 중간점검을 하지 않은 책임이 면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회에서 제기가 된 이후에 이것도 무려 몇 년이나 지난 사항을 지금 처리한다는 것은 전부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전점검도 면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LGU+ 대표가 권영수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건이 발생한 시점의 대표를 생각해서 하신 것인지….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조사 당시에…,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그것은 설명됐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자문 다 받으셨지요?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 ○ 이효성 위원장

- 과정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철저를 기해야 하고 제가 별도로 법률자문관님 의견을 한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지요.

### ○ 광영환 법률자문관

- 시정조치안의 골격을 보면 유선통신사와 밴사와의 관계에서는 밴사를 이용자로 보고 밴사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가맹자를 이용자로 봐서 둘 다 중요사항 미고지를 이유로 제재하는 것입니다. 이용요금에 대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중요사항에 해당되는데 지금 받은 의견을 보면 유선통신사와 밴사는 모두 상대방이 알았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고지 설명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유선통신사나 밴사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한 주장이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해 시정조치안이 도출되었고, 향후 만약에 소송이 있다면 그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을 것이라거나 거래 관행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은 처분의 상대방인 유선통신사나 밴사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 시정조치안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

- 위원장님, 혹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별도로 없네요.

###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공식적으로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겠다는 신청은 없었습니다. 단순 참관 신청만 있었습니다.

### ○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

- 저는 참관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 ○ 허 육 부위원장

- 사업자 의견 청취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의결결과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의견진술을 듣고서 원안 결정한 안건에 관해서 다른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원래 절차상 과정금 대상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합니까?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예고를 하고 사업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그래서 별도로 들을 필요는 없다?

###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미 의결이 났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 ○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

- 저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에서 나온 박성원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사결과에서 나왔듯이 유선사업자가 밴 사업자의 이 '1639요금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로 밝혀진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1639요금제'가 있다는 존재를 몰랐고, 또 아시다시피 방통위가 2012년 보도자료 등에 의해 뿌려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을 받은 바 없습니다. 아마 보도자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사는 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고지를 받지 못했고, 저희는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사업 방식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가맹점에게 그런 요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전화 1통은 항상 그 가격으로 썼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늘 알려진 것은 저희가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있듯이 저희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과정금을 받고 시정조치, 그때 올 초에 왔을 때 저희가 바로바로 협조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서로 협조해서 모두 경감 조치나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 해서 했고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밝혀진 사실로 봐서는 저희는 이 내용 '1639요금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어떤 조치가 나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그런 내용은 이미 서면으로 다 제출하셨지요?

### ○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

- 예.

## ○ 이효성 위원장

- 앓으시지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절차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입니다. 종편PP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관련 특정감사 결과 조치를 반영하고 허가·재허가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경과입니다. 2012년 7월 26일 고시를 제정하였고, 동년 8월 22일 (주)미디어크리에이트를 허가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8일 (주)TV조선미디어렙·(주)JTBC미디어컴·(주)미디어렙A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고, 동년 11월 17일 (주)MBN미디어렙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5년 5월 28일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고시가 제정되었고, 동년 8월 17일 (주)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재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1월 3일 종편PP 재허가 심사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고, 동년 3월 24일 (주)TV조선미디어렙·(주)JTBC미디어컴·(주)미디어렙A에 대한 재허가와 동년 11월 27일 (주)MBN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8년 2월 21일 방통위는 (주)TV조선미디어렙·(주)미디어렙·(주)MBN미디어렙에 대한 소유제한 위반관련 시정명령을 한 바 있고, 동년 8월 8일 운영지원과에서 종편PP 소유제한 위반관련 미디어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 통보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허가기본계획 포함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시 제7조제2항 관련입니다. 심사위원회 역할 및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직무,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심사방법을 허가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기존 1, 2, 3, 4 이외 <4>번 심사위원회 직무와 <5>번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심사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고시 [별표 2] 관련 재허가 심사기준 개선입니다.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입니다.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가점 평가방식에서 배점 평가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가점방식,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에 대한 5점 가점을 개정안에서는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하고 15점 배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17년 재허가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평가가 ‘가점평가’로 이루어져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령

위반사항 평가 통합입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각 심사 항목별로 분리하여 평가한 사항을 관계법령 위반 정도 항목으로 일원화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듯이 현행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건수별 감점, 시정명령 이행여부와 그 다음에 법 제38조 과징금 부과,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유무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를 통합하여 감점 10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항목 개선입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항목의 중복 평가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구조 건전성 항목과 중복 평가제는 신용평가등급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 배점 조정입니다.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평가방식 등 심사기준 개선 및 종편PP미디어렙 공익성 배점 강화 등에 따라 심사항목 간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 개정안입니다. 먼저 지상파 미디어렙입니다. <1-2>번 항목 공정거래 질서 실현 실적 및 계획을 15점에서 12점으로, <3-3>번 항목 적정한 경영계획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9점에서 5점으로, <3-4>번 항목 재무상태 등 재정건전성 6점에서 3점으로, <4-1>번 항목 광고 표준화 등 방송 및 광고 산업 진흥 실적 및 이행계획을 10점에서 5점으로 내리는 대신 <5-1>번 항목에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배점 항목으로 15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편PP 미디어렙입니다. <1-2>번 항목에 공정거래 질서 및 실현 실적 및 계획을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4-1>번 항목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가점 항목에서 배점 항목으로 15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번 항목 방송광고 판매대행 조직과 인력 운영 실적 및 계획을 15점에서 10점으로 인력 운영 등 전문성 확보 여부 및 계획을 10점에서 5점으로, <2-3>번 항목 경영계획의 이행실적을 14점에서 12점으로, <2-4>번 항목 재정건전성 항목을 6점에서 3점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1-2>번 항목 종편PP 미디어렙의 공익성 강화 배점은 재허가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번 신청양식 개선입니다. 소유제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심사 강화를 위해 주식소유 및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서식, 허가유효기간에 따른 재무제표 서식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청양식은 별지 제2호 서약서에 주식처분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식처분기간은 허가조건 부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3호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관련입니다. 주식소유관련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 주주명칭, 주식소유비율, 유형, 주요업종 이외에 법인등록번호, 주식수, 출자액, 특수관계여부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소유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서식을 신설한 것입니다. 별지 4, 4-1 항목의 재무제표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허가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양식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까지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는 고시 일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그동안 혀술하게 운영되어 왔던 미디어렙의 허가 등에 대해 그 절차와 기준을 여러 가지로 보완한 내용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육 부위원장

- 본 건은 종편PP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위반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상당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비된 허가와 재허가 절차를 개선해서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다 챙겨본 것이고 사전보고를 받아서 제안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허가 및 재허가 심사절차를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명확성을 높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기반국장께서는 시민단체에도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해서 방통위 개선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렙의 허가·재허가 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강하는 성격인데 만시지탄입니다. 진즉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잘 들여다봤더라면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특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에는 허가 신청법인의 자격, 또 이에 대한 심사방법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진즉부터 여기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할 부분인데 그 항목이 이제야 보강됐습니다. 또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도 허가·재허가, 재허가까지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 된 개정안입니다. 특히 무조건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가지고 점수를 보태주는 5점을 가점만 해 주는 상태에서 15점으로 비례량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무조건 5점을 보태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행실적에 따라서는 감점도 될 수 있고 또 잘하면 15점까지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왜 진즉 이런 생각을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니까 주식의 신청양식도 개선됐습니다. 설립예정법인의 주식처분기간이 변경됐는데 현행은 허가 후 사업개시일까지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허가 후 3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 의미는 주식을 함부로 못 팔게, 함부로 취득 못 하게 한 것이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 후 3년 동안 주식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고시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위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다른 방송사업자 같은 경우도 대부분 허가조건으로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래서 양식에서는 빼고 심사할 때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듣기로는 모 종편 미디어렙 같은 경우 바로 허가 직후 다음 날 주식을 처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진즉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뒤늦게나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의 평가를 통합했다고 하는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또 과징금 부과를 최대 10점 감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한 것은 통합해서 감점하도록 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점수 감점은 똑같습니다. 최대 10점이고, 다만 심사할 때 기준에는 신·구조문대비표 왼쪽 편에 보시면 최대 10점 감점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건수별 감점, 시정명령 이행여부 평가 이것이 10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 각 항목평가에 이것들이 항목별로 들어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중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군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래서 이것은 성질이 같은 것이라서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제는 개선됐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도 됐으니까, 특히 재허가를 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허가가 날 때 그때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지난번에도 이것 했으니까, 최초 허가 때 이렇게 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고 있겠지’ 이것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최초로 허가를 한다, 이런 심정으로 실무자들이 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도 허가·재허가, 재허가라는 항목을 추가했지만 진즉부터 이렇게 됐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심사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재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15점을 비계량으로 해도 설득력이 있습니까? 계량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계량으로 하려면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질이 다 달라서 허가조건마다 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계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15점의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정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이 부과조건을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점이면 비계량점수 비중이 꽤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할 때 그 기준을 사업자 특성에 따라 기준을 잘 정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 운영하면 이현령비현령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에 가지고 있던 저희들 기준보다 면밀하게 많이 개선한 것이라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허가·재허가 조건들이 아주 다양하게 사업자별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계량화시키기는 그렇고 심사위원회에서 어차피 심사할 때는 세부기준을 정하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가 조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계량화될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가 되겠습니다. 방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제4기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방송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대상 매체별 특성 반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방송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12월에 제4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했고, 이어 '18

년도에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금년 3월에 방송평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였고, 5월까지 연구반 운영을 총 7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시 7월에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워크숍과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방송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고사항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매체특성 반영 확대 및 평가체계 객관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사업자군(群)별 총점과 영역/평가항목별 배점 조정입니다. 개정내용은 사업자군(群)별 평가항목 수와 기존 총점 차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점을 설정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4쪽에 보시면 사업자군(群)별 총점 현행과 조정된 <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첫 번째가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입니다. 역시 개정내용을 보시면 방송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群)을 설정하였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고용 평가방식 개선입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2배 가산하여 장애인 고용비율을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송기술 투자 평가방식 개선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세부 평가척도에서 ‘방송기술 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방송평가의 보도 분류기준을 유지하되, 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주 제작시장의 표준계약서 적용대상을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 세부 평가척도인 ‘표준 계약서 활용의 적정성’의 적용 대상사업자에 ‘EBS’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계법령 준수 평가의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평가항목의 과기정통부의 제재조치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개정입니다. 첫 번째, 지상파·종편PP의 외주제작시장의 상생협력 강화 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 강화와 방송사·외주 제작사와 독립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입니다. 역시 관련한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도PP의 경우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역시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수상실적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SO와 위성의 경우 재난방송 편성 평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홈쇼핑PP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적용시점은 ‘20년에 평가하는 ’19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합니다. 향후계획은 의결하여 주시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11월에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통위 의결을 시행하겠습니다. <별첨>으로 사업자군(群)별 평가항목 우선순위 및 배점 조정내역을 <표>로 정리하였고, <붙임>에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육 부위원장

- 방송평가 점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 시 심사총점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동안 평가기준의 변별력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제4기 위원회에서 위원 워크숍과 전문가토론회를 거쳐 평가제도 개선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업을 이끌어 주신 표철수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무처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방송평가 제도개선의 정책적 의미를 제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평가대상 간의 변별력을 높여서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한 점입니다. 둘째는 방송환경 변화를 방송평가에 반영했다는 것이고, 지상파와 종편PP는 외주제작과 관련된 공정 거래 확립, 상생협력 강화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제4기 위원회의 브랜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을 방송평가에도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난방송평가, 장애인 고용평가, 방송기술투자 평가 개선이나 지상파 UHD 프로그램의 편성 평가 신설 등도 방송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평가에 반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도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성명이나오는 등 매번 규칙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도 사업자 의견을 사전에 부분 수렴했지만 규칙 조문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행정예고 기간에 사업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그룹의 의견수렴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도 했고 토론회도 가져서 전반적으로는 잘됐다고 봅니다. <별첨>에 보면 사업자군(群)별 평가항목 우선순위 및 배점 조정내역을 보면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상파와 종편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 시청지원에 수화, 자막 배점이 60점에서 50점으로 지상파 같은 경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종편은 같은 항목이 35점에서 40점으로 배점이 올라갑니다. 배경이 어떻게 설명되지요?

##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총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700점과 600점으로 총점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이 조금씩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급에 대한 우선순위는 현재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제대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렸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청 지원이 지상파는 그만큼 비중이 낮아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난방송 편성을 보면 지상파는 80점에서 55점으로 배점이 대폭 낮아졌고, 종편은 65점에서 45점으로 역시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마치 재난방송 편성에 대한 배점 비중이 낮춰진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종편이 지상파방송과 종편에 대한 배점이 각각 900점, 700점으로 200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상파 같은 경우 조정된 것이 900점에서 700점으로 200점이 마이너스가 됐고 종편 같은 경우 700점에서 600점 배점이 조금 하향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다 똑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비중이나 비율은 같다는 것이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비중은 다 똑같은데….

○ 김석진 상임위원

- 총점이 달라지니까 배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 시청지원이 지상파가 종편보다는 그만큼 공익성을 띠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배점이 낮아지고 종편이 오히려 배점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어쨌든 지상파들은 그동안 장애인방송을 오랫동안 잘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비중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편도 실제로 전체적인 비중에 보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입법예고기간 중 장애인단체 쪽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린이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지상파는 비중이 낮아졌고 종편은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지상파는 잘해 왔고 종편은 심야시간에 잘 안 보는 시간에 어린이들이 기상도 하고 있지 않고 취침하는 시간에 그렇게 슬쩍 끼워 넣어서 생색이나 냈다,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높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총점 대비 우선순위나 비중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접수 자체가 조금씩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중으로 따지면 동일하게 현재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를 주도하셨는데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이번에 방송평가규칙을 바꾸는 것이 지금까지 방송평가 제도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입니다. 대폭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의견들도 그 사이에 듣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총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예고 과정이나 또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설명하고 충분히 또 언론에 홍보해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도록 최종 의결될 때까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또 사업자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잘해 드려야 합니다.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4분 정회 】

【 11시 22분 속개 】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저작권 보유 합의가 있을 경우,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종합대책에 보면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이 있었습니다. 인정기준 개정으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계약서에 외주사의 저작권 합의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외주제작물 의무편성인정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의조항이 없을 경우 인정비율의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 부여인데 고시에 제11조제7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서에 외주사의 저작권 보유 합의조항 유무에 따라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중치 산정은 관련 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고시 내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인정비율 가중치는 모두 ‘100분의 110’으로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편성고시에 가중치를 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주시청시간대 교양분야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역시 100분의 110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서에 외주사의 저작권 보유 합의조항이 있을 경우에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주사의 저작권보유 합의조항이 없을 경우, 편성시간 인정비율 감경은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위임의 한계 일탈로 인해서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결해 주시면 행정예고와 추후 11월, 12월에 위원회 의결 및 관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제4기 위원회가 처음부터 큰 목표의 하나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고 했던 움직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허 육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육 부위원장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은 제4기 위원회의 브랜드정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가운데 가장 쉬운 부분인데 늦게나마 고시에 반영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주제작 제도개선을 위해 방통위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은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 강화와 인권 보호 그리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저작권의 합리적인 배분,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의 금지 행위조항 신설입니다. 이 과제들은 범부처 개선대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과 저작권 배분은 협찬시장의

왜곡까지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송기반국장님, 외주제작 개선과제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말씀하신 외주시장 불공정 관행 종합대책에 있는 사항들 중에서 타 부처에서 하는 사항들은 나름대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권선언 부분은 계속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이번 가을에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은 현재 연구반 작업을 거의 끝내고 곧 초안을 마련해서 사업자들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허 육 부위원장

- 법과 제도개선 작업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은 고시 개정을 통해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지만 저작권 보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산정과 지급, 또한 저작권과 수익 배분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과 방송사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고시안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송사와 외주사 간 이런 불공정 관행은 한국방송사의 누적된 적폐 중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기 위원회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청산을 강조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요청드립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 고시가 개정이 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서로 상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실질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구분은 방송사 간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작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나름 사업자 간 합리적인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 개선과 함께 이러한 외주제작 인정기준이 조금 더 가중치를 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원래 외주제작 편성비율이라는 제도의 정책목표 자체가 외주제작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주제작 시장에서 저작권이 넘어갈 때 여러 가지 같은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외주제작사와 본방송 하는 쪽과 현안 중 외주제작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 10 정도 가중해 줘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00분의 130 정도는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미미하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저작권을 나누어 가지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해외 판매할 때 매체력이 강한 지상파에서 외주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지상파는 그것을 팔다가 안 되면 사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 100%를 다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반반씩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협의가 됐으면 그것을 외주제작사가 밖에 나가서 팔려고 죽어라고 쫓아다닙니다. 말하자면 큰 사업자는 사장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저는 100분의 110 정도는 너무 적다, 실효성이 없다고 의견을 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들 표철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150 하겠습니다.

###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의견을 말씀드리면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더 높이면 실효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처음 도입하는 것인가 고시를 한번 시행해 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순차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그래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방금 양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속도감이 있으려면 고시를 한번 해 보고 하자, 이것은 방송현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보고 웃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가운데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이 고시를 통해 강력한 신호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건은 비율을 대폭 높여서 방송사들에게도 시그널을 주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건은….

### ○ 허 옥 부위원장

- 외주제작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반길 것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도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지요.

## ○ 허 육 부위원장

-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같은 곳에서는 독립PD 제작지원에 참여하여 일정 정도 포션은 두지만 저작권을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아서 초창기에 독립제작사들이 해외로 나아가는데 상당한 정도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에서는 저작권 전체를 다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30%, 때에 따라서는 25%라 하더라도 방송사들에게 주는 신호 그리고 외주제작사들에게 미치는 방통위의 의지를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자리에서 10이다, 20이다, 30이다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린다는 데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를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숫자를 갑자기 급조해서 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 조경식 사무처장

- 저희가 그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또 행정예고할 때 의견수렴해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 허 육 부위원장

- 행정예고할 때 10%로 했던 것을 나중에 높여서 30% 정도로 높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가능합니다.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의결해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안을 저희가 타 부처 내지는 관계자 의견수렴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제 생각은 10%로 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독립제작사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 40%, 30%만이라도 저작권을 준다면 우리가 들고 나가서 죽어라고 팔 수 있다. 그러면 사장되는 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우리도 그나마 30%라도 방송사들도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조차 외면하고 있다” 그런 하소연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 주장은 아예 행정예고를 할 때부터 비율을 높여서 예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때 그 의견을 듣고 비율을 높이자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보고사항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다음에 보고를 다시 받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다음에 보고를 한번 더 받고….

○ 조경식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더 받고 하지요.

○ 허욱 부위원장

- 따로 추가로 받을 사안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수정해서 그 수치에 관련해서는 본안대로 하되, 수치는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위원장에게 위임해서 위원장님이 결재하셔서 수치를 올리십시오.

○ 허욱 부위원장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보고사항이니까 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 허 육 부위원장

-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수치에 관련해서는 담당 과·국에서 이야기해서 추가로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제가 참조하게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올리면 좋겠는지 한번 수치를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아까 30%….

###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100분의 30 정도는 해야 그나마 눈을 떠서 '어, 이것' 이렇게 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허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허 육 부위원장

- 저도 30%가 초창기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김석진 상임위원

- 갑자기 110에서 130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 이효성 위원장

- 110이 기준선이 아니지요?

### ○ 김석진 상임위원

- 초기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정책과 형평성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 수치를 이 자리에서 결정짓는 것은 안 됩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아니, 참고로 제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이 합당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위원장님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고 결정 하시도록 위임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선인지 모르겠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100분의 130이라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서 실무진 보고를 다시 받으시고 위원장께서 정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제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130으로 해도 현장에서는 실제 협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저도 그렇게 봅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150,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건에 150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니까 130 정도로 하면 외주사에서 보거나 방송사에서 볼 때 ‘어?’ 이렇게 보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수치를 조정해서 의결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조경식 사무처장

- 의결안건은 아니고 다시 보고안건으로….

### ○ 표철수 상임위원

- 다시 봐야지요.

### ○ 조경식 사무처장

- 다음 주에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일정은 상관없습니까?

### ○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

-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평가에 대해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파와 종편 간 배점 차이가 나지만 비중은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비중은 700점, 600점 총점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비중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편성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은 다음 차수 회의에 다시 시뮬레이션 해 보고 검토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 이효성 위원장

- 그렇게 하시지요.

## 8. 기타

### ○ 이효성 위원장

-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9분 폐회 】